



부산시

2018년 부산시 재정공시(예산)


부 천 시

【 목 차 】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3
 2018년 부천시 재정공시(예산) 총괄	4
1. 공통공시 총괄	5
2. 예산규모	6
2-1 세입예산	6
2-2 세출예산	7
2-3 지역통합재정통계	8
3. 재정여건	9
3-1 재정자립도	9
3-2 재정자주도	10
3-3 통합재정수지	11
4. 재정운용계획	12
4-1 중기지방재정계획	12
4-2 성인지 예산현황	13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14
4-4 성과계획서	16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7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18
5. 재정운용성과	20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20
4-8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21
4-9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2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2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1 재정공시 개념 및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

2 공시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3 제도 도입 추진경과

-  '94년부터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 운영
 - 자치단체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회계년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 공개
 -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
-  '06년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
 - 재정공시 대상, 공시방법, 시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
 - 기존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에 대한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
-  재정공시 시기 확대
 -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개적 적시성을 위해 결산기준의 재정공시에서 벗어나 재정정보 공개 확대

- 연 2회 (2월 예산기준 및 8월 결산기준)

2018년 부천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 2.

부 천 시 장 (인)

- ◆ 우리 시의 ‘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1조 8,591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40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2조 1,414억원)보다 2,823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736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7,614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18억원입니다.
- ◆ 우리 시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40.37%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2.49%입니다.
- ◆ 우리 시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8억원의 적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복지분야 예산의 의무적 경비의 지속적 증가로 재정운영의 자율성 등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내부행정의 경영방식 전환을 통해 자체수입을 확충하는 등 재정력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budget.bucheon.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정경환(625-2523)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부 천 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 입 예 산	18,591	15,183	3,408	21,414	19,355	2,059
	세 출 예 산	18,591	15,183	3,408	21,414	19,355	2,059
	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40.37	42.38	△2.01	48.62	51.46	△2.84
	재정자주도[당초예산]	62.49	64.07	△1.58	67.41	69.40	△1.99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28	△9	△18	253	377	△124
재정운영계획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인 지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 민 참 여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과 계 획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정 운 용 상 황 개 요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 산 편 성 기 준 별 운 영 상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감 액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인 센 티 브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단체 : 시 - (1) / 15개 시

(경기 수원, 경기 성남, 경기 고양, 경기 부천, 경기 용인, 경기 안산, 경기 안양, 경기 남양주, 경기 화성,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남 창원, 경남 김해)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부천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859,146	1,276,843	257,869	242,011	82,423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1,204,370	1,244,989	1,613,977	1,518,313	1,859,146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892,906	100.00	941,036	100.00	1,072,753	100.00	1,119,674	100.00	1,276,843	100.00
지방세	319,278	35.76	315,724	33.55	338,420	31.55	371,969	33.22	406,784	31.86
세외수입	51,986	5.82	50,060	5.32	70,831	6.60	60,496	5.40	66,900	5.24
지방교부세	110,496	12.37	114,366	12.15	118,540	11.05	139,938	12.50	152,565	11.95
조정교부금 등	69,207	7.75	80,443	8.55	81,273	7.58	102,919	9.19	129,869	10.17
보조금	308,296	34.53	333,442	35.43	362,867	33.83	402,353	35.93	478,909	37.51
지방채	0	0.00	27,000	2.87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3,643	3.77	20,000	2.13	100,822	9.40	42,000	3.75	41,816	3.27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부천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859,146	1,276,843	257,869	242,011	82,423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1,204,370	1,244,989	1,613,977	1,518,313	1,859,146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892,906	100.00	941,036	100.00	1,072,753	100.00	1,119,674	100.00	1,276,843	100.00
일 반 공 공 행 정	47,567	5.33	49,060	5.21	66,593	6.21	57,523	5.14	55,175	4.32
공공질서 및 안전	11,175	1.25	13,220	1.40	15,283	1.42	7,619	0.68	8,185	0.64
교 육	47,447	5.31	43,977	4.67	40,122	3.74	32,994	2.95	43,027	3.37
문 화 및 관 광	60,458	6.77	66,069	7.02	80,347	7.49	77,564	6.93	83,547	6.54
환 경 보 호	63,991	7.17	58,530	6.22	65,145	6.07	80,928	7.23	90,872	7.12
사 회 복 지	362,050	40.55	377,229	40.09	422,022	39.34	469,193	41.90	573,754	44.94
보 건	18,879	2.11	20,248	2.15	31,669	2.95	27,977	2.50	29,322	2.30
농 립 해 양 수 산	6,454	0.72	8,798	0.93	9,550	0.89	9,748	0.87	9,006	0.71
산 업 · 중 소 기 업	19,316	2.16	21,552	2.29	22,120	2.06	22,851	2.04	21,146	1.66
수 송 및 교 통	53,534	6.00	55,477	5.90	65,559	6.11	68,309	6.10	74,051	5.80
국 토 및 지 역 개 발	32,417	3.63	59,105	6.28	65,686	6.12	59,802	5.34	61,946	4.85
과 학 기 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 비 비	14,624	1.64	11,674	1.24	25,128	2.34	14,510	1.30	10,500	0.82
기 타	154,994	17.36	156,098	16.59	163,528	15.24	190,656	17.03	216,312	16.94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부천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 A)	비율 (B-A)/A
합 계	1,602,178	1,958,560	356,382	22.24
부천시	1,518,313	1,859,146	340,832	22.45
공사·공단	46,896	55,197	8,301	17.70
출자·출연기관	36,968	44,217	7,249	19.61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공사·공단(1개) : 부천도시공사
- ▶ 출자출연기관(5개) : 부천문화재단, 부천산업진흥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장학재단,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부천시 : <http://budget.bucheon.go.kr>
 부천도시공사 : <http://www.best.or.kr/>
 부천문화재단 : <http://www.bcf.or.kr/>
 부천산업진흥재단 : <https://www.bizbc.or.kr>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http://www.komacon.kr/komacon/>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 <http://www.bwyf.or.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부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0.3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0.37 (37.10)	1,276,843 (1,276,843)	515,500 (473,684)	761,343 (761,343)	0	0 (41,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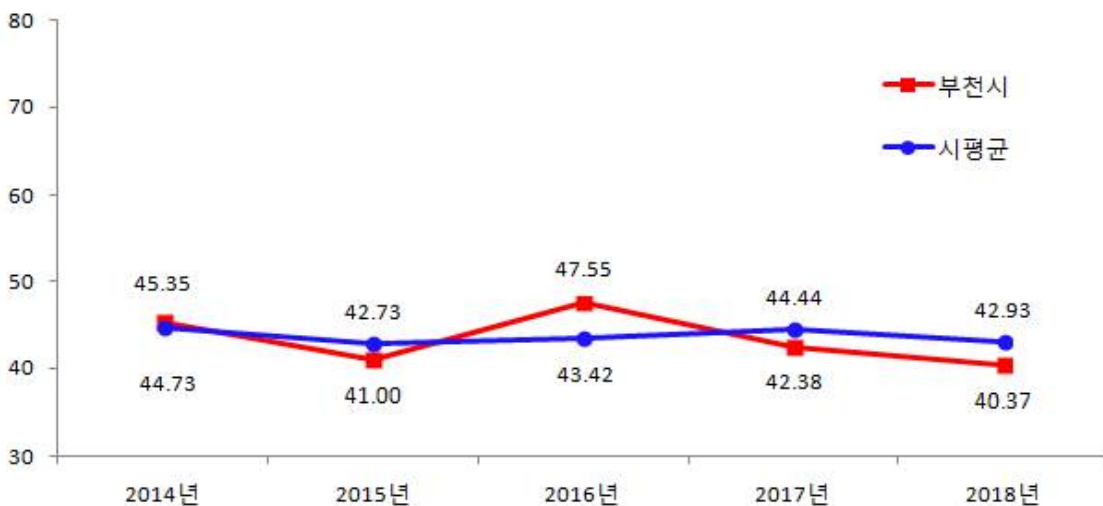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45.35 (41.58)	41.00 (38.87)	47.55 (38.15)	42.38 (38.62)	40.37 (37.1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연도별 재정자립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유사단체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며, 이는 계속되는 경기 불황 및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 유지, 도시개발 한계점 도달, 대기업 이탈로 세수 감소 등 세입여건의 변화가 세수 감소로 이어져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3-2.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부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2.4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2.49 (59.22)	1,276,843 (1,276,843)	797,934 (756,118)	478,909 (478,909)	0	0 (41,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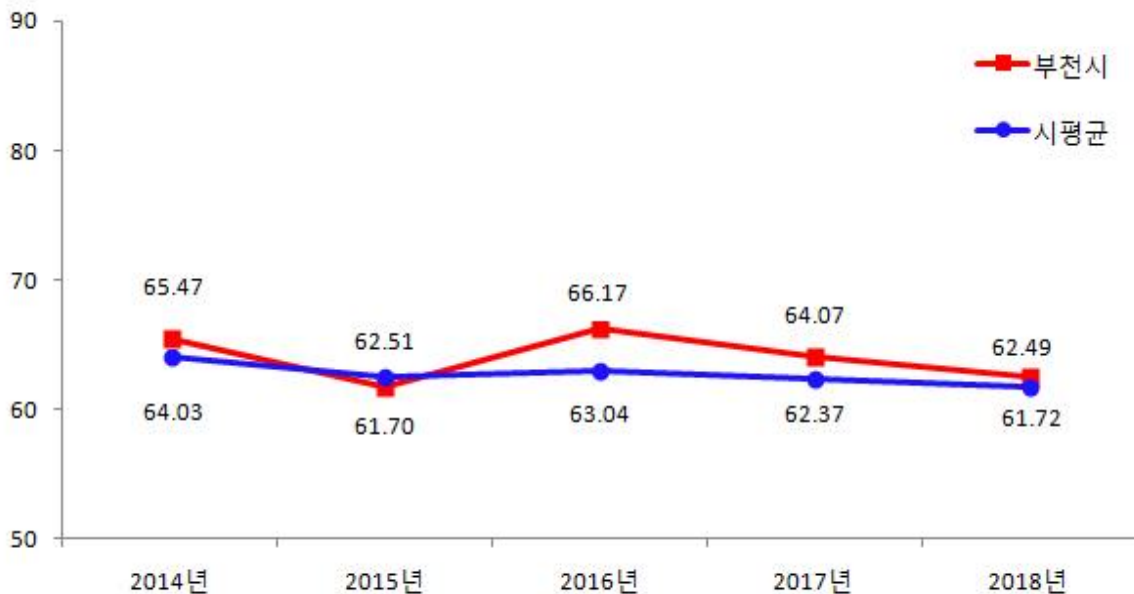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65.47 (61.70)	61.70 (59.57)	66.17 (56.78)	64.07 (60.31)	62.49 (59.2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기조 유지로 사회복지비를 비롯한 국·도비의 의존재원의 급속한 증가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재정자주도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전국 지자체의 공통적인 추세임.

3-3.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 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부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 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1,516,202	1,758,877	390	3,170	2,780	242,702	1,761,657	△245,455	△2,753
일반회계	1,235,027	1,248,146	0	2,000	2,000	41,816	1,250,146	△15,119	26,697
기타 특별회계	107,413	221,001	250	610	360	88,879	221,361	△113,947	△25,068
공기업 특별회계	144,346	256,900	0	0	0	112,007	256,900	△112,554	△548
기 금	29,416	32,831	140	560	420	0	33,251	△3,835	△3,835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 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140,290	△72,630	△130,019	△183,093	△245,455
통합재정수지 2	△5,033	△6,866	12,259	△928	△2,753

↳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대비 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의 적자로 이어지고 있음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698,563	1,757,603	2,071,259	1,810,064	1,837,721	9,175,210	2.00
자 체 수 입	855,691	867,355	1,132,316	826,448	817,322	4,499,132	-1.10
이 전 수 입	644,413	683,385	735,007	782,305	825,029	3,670,139	6.40
지 방 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8,459	206,863	203,935	201,311	195,370	1,005,938	-0.40
세 출	1,698,563	1,757,603	2,071,259	1,810,064	1,837,721	9,175,210	2.00
경 상 지 출	597,299	580,882	569,597	572,354	599,656	2,919,788	0.10
사 업 수 요	1,101,264	1,176,721	1,501,662	1,237,710	1,238,064	6,255,421	3.00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 연평균 증가율 = $[(\text{최종연도}/\text{기준년도})^{1/(\text{전체연도 수} - 1)} - 1] \times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부천시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72	29,547
여성정책추진사업	16	11,77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4	17,66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	108

-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2018년 부천시 성인지 예산서 바로가기](#))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부천시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1,276,843	3,634	3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지 원 기 타 부 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677	
역 곡 2 동	역곡2동어울마당옥상텃밭가꾸기사업	38	신규사업
괴 안 동	경인철로변벽화그리기사업	39	〃
소 사 동	멸피사거리~성모병원후문보도정비사업	70	〃
역 곡 1 동	춘덕산 복숭아과원 원미산 둘레길 연결로 조성사업	39	〃
범 박 동	범박동순환 마을둘레길 조성	80	〃
역 곡 3 동	역곡역 남부 철로변 벽화사업	50	〃
원 미 1 동	버스정류장 쉼터 설치	80	〃
심 곡 1 동	‘up진말몽당축제 ‘추억의벽	22	〃
춘 의 동	가로수 보호덮개 설치	36	〃
심 곡 2 동	자동제세동기 설치	15	〃
오 정 동	우편집중국 앞 인도 조성	60	〃
원 중 1 동	마을 커뮤니티 소통카페	98	〃
원 중 2 동	성오로 여유가 있는 테마거리 조성사업	95	〃
고 강 본 동	부천끝?부천시작(고강로170번길일대벽화조성사업)	22	〃
고 강 1 동	깨끗한 마을만들기 캠페인	9	〃
심 곡 본 1 동	이동식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24	〃
소 사 본 3 동	소새울 테마거리 조성	77	〃
소 사 본 동	여성·청소년 안심귀갓길 조성사업	52	〃
심 곡 본 동	필벽무지개길 내 주민 휴게쉼터 조성	50	〃
송 내 1 동	소사복숭아테마거리조성	38	〃
송 내 2 동	「초록마을만들기」생태·벽면녹화2차조성사업	32	〃
중 2 동	보배어린이 공원 정비사업	62	〃
상 2 동	인천경계상2동19통단독주택지역녹지대정비	72	〃
상 동	시와꽃이있는거리(보행자도로)추가조성사업	61	〃
상 1 동	숲속만화로 벤치 캐노피 설치	64	〃
중 1 동	무지개마을 보행자도로 녹지대 정비	94	〃
신 흥 동	삼작로 가로수 화단조성사업	65	〃
상 3 동	시민의 강 환경정비	77	〃
중 3 동	덕유마을 산책로 정비사업	71	〃
도 당 동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20	〃
중 4 동	은하마을 산책로 조성	65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4-4.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부천시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4	125	172	277	1,518,854	1,229,909	288,945
의회사무국	1	1	1	3	3,056	2,635	421
보좌기관	1	8	10	19	12,025	8,448	3,577
경제국	1	20	25	42	314,843	230,957	83,885
문화국	1	12	20	24	111,998	72,284	39,714
복지국	1	14	19	43	562,890	462,511	100,379
도시국	1	6	13	9	12,313	8,691	3,621
주택국	1	8	10	11	34,397	30,155	4,242
행정국	1	13	14	25	37,300	35,423	1,876
부천시보건소	1	9	12	24	37,411	34,893	2,518
환경사업단	1	6	8	13	121,301	118,682	2,620
교통사업단	1	7	11	23	108,521	99,321	9,200
도로사업단	1	6	9	11	36,073	20,179	15,893
공원사업단	1	8	12	13	64,576	53,470	11,106
교육사업단	1	7	8	17	42,988	31,754	11,235
동	0	0	0	0	19,163	20,506	△1,342

-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2018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바로가기](#))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40.37	62.49	44.94	31.44	49.52	35.5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부천시청 예산현황 바로가기](#))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28	63	△420
	부단체장		45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90	661	△229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397	171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17	
	의원국외여비		109	
지방보조금		26,723	26,115	△608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312	2,312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4,094	-
공무원 일·숙직비		-	268	-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단위:천원)

항목별		기준액 산출내역	예산편성액 산출내역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단체장	총액한도액 내 자율편성 운영	63,360 (전년기준 동결편성)
	부단체장	최근3년 평균액 대비 17.6% 초과시 적용 당해 자치단체 기관운영업무추진비*(1+0.003)	44,880 (전년기준 동결편성)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기초기준액(881,000)+정책사업연동액(26,670) *보정계수(0.3) = 890,000	편성액 661,140 (24% 절감)
지방의회 관련 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총액한도액 내 자율편성 운영	171,506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3년간 당예산의 평균액(1+0.297))+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최근3년간 당예산의 평균액(1+0.176))+ (지방의원규약비의 최근3년간 당예산의 평균액(1+0.05))} =397,226천원	의 장 3,130*12월 = 37,560 부위원장 1,580*12월 = 18,960 상임위원장 1,200*4명*12월 = 57,600 예결위원장 1,200*2월 = 2,400 계 : 116,520
	의원국외 여비	4년마다 물가상승률 등 감안 총액한도 조정	(의원정수(28명) * 3,000천원)+ (국체행사참가:연간한도액 (84,000)*30%) = 109,200 기준액의 25%범위내에서 자율조정
지방보조금		25,129,419(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 (1+0.0634(최근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26,722,624	편성액 : 23,114,561
맞춤형복지 제도시행경비		1인당 맞춤형 복지 기준액 1,360,000원	1,360*3,010명 = 4,093,600
공무원 당직비	일·숙 직비	(60*10명*119일) + (60*9명*365일) = 268,500 (※ 일직 : 10명, 119일, 숙직 : 9명, 365일)	편성액 268,500

5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911	4,714
인건비 절감	1,651	850
지방의회경비 절감	62	9
업무추진비 절감	212	371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0	△455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353	3,226
지방청사 관리·운영	18	713
읍면동 통합운영	486	0
민간위탁금 절감	△165	0

-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 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30,663	△3,820
지방세 징수율 제고	4,728	5,769
지방세 체납액 축소	25,840	△17,400
경상세외수입 확충	△3,546	2,925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86	4,893
탄력세율 적용	3,727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7

-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 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7년에 우리 부천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30
계약 관련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의무사용량 미적용	8
예산편성기준 등 행정절차 관련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7
징수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취득신고 누락에 대한 취득세 추징 소홀	15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7년에 우리 부천시가 경영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32
재정분석 우수	2017년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32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